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가공·유통"을 "처리·포장·보존·유통"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식용란(食用卵)·식육가공품·유가공품·알가공품"을 "식용란(食用卵)"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식품"을 "식품(「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1호 중 "축산물가공장, 식육포장처리장"을 "식육포장업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13호를 삭제한다.

제3조의2제2항제3호 중 "가공"을 "처리"로 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기준,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각각 "기준 및 규격"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가공·포장"을 "처리·포장"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1항 및 제2항"으로, "기준,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기준 및 규격"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1항 및 제2항"으로, "기준 및 성분규격"을 "기준 및 제2항"으로, "기준,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기준 및 규격"으로 한다.

②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축산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리령

- 으로 정한다.
- 1. 축산물의 원료에 관한 기준
- 2. 축산물의 처리·포장·보존 및 유통의 방법 등에 관한 기준
- 3. 축산물의 성분에 관한 규격
- 4. 원유의 위생등급에 관한 기준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 및 규격의 시험방법 제5조제1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축산물의 위생적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을 "축산물의 위생적 처리를 위하여"로, "규격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를 "규격 등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축산물에 사용하는 용기등은 제1항에 따른 규격 등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가공"을 "처리"로 한다.

제8조제2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식육포장처리업"을 "식육포장업"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처리·가공"을 "처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영업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를 "영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가공·유통 및 판매"를 "유통·판미 및 식품의 가공"으로, "안전관리인증기준을"을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과 「식품위생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식품의 가공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을"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안전관리인증업소 또는 안전관리인증농장으로"를 "안전관리인증업소·안전관리인증농장 또는 「식품위생법」 제 48조제3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이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라 한다)로"로 한다.

제9조의4제4호 중 "제12조제2항·제3항"을 "제12조제2항"으로 한다. 제9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6(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법률 적용) 제9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로 인증을 받은 자 중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보는 자에 대해서는 제9조, 제9조의3, 제9조의4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증변경, 인증 및 변경 인증 사실의 증명 서류발급, 교육, 조사·평가, 인증의 취소 및 그 밖에식품안전관리인증적용업소에 관한 사항은 「식품위생법」 제48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2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 또는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3항에 따라 검사하거나 제4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1항, 제2항"으로 한다.

제12조의3제1항 중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제4조에 따른 기준 및 규격"으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 중 "처리·가공"을 "처리"로, "가공·포장"을 "처리·포장"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축산물의"를 "축산물 및 식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가 판매하는 식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로, "영업장"을 "영업소(사무소, 창고, 제조소, 저장소, 판매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으로, "영업장,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를 "영업소"로, "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9조제1항 및 제2항"을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제20조의2제1항 중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다음 각 호"로, "축산물 위생에"를 "축산물 위생 등에"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제19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
-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 수거
- 3.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수 거
- 4. 「식품위생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수거 제21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7호의2를 삭제한다.

4. 식육포장업

제22조제1항 중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도축업·집유업 또는 축산물가공업"을 "도축업 또는 집유업"으로, "식육포장처리업"을 "식육포장업"으로,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제22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영업의 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을 받은 날부터 근무일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 처리지연 사유를 통지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영업의 변경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근무일을 기준으로 7일 이내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 처리지연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한 내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 처리지연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한이 지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제24조제1항 및 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근무일을 기준으로 3일 이내에 수리(修理) 여부 또는 수리 처리지연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한이 지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제24조제4항(종전의 제3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제5항(종전의 제4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제24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5항의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9조에 따라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제25조 전단 중 "축산물가공업"을 "식육포장업"으로, "축산물을 가공하거나 식육포장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식육을 포장처리하는"을 "포장육을 만드는"으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특별자치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26조제4항 중 "제24조제3항"을 "제24조제4항"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를 "시·도지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을 "제12조제1항·제2항·제5항"으로, "제22조제5항"을 "제22조제6항"으로, "제3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1조의4제1항 후단·제2항 단서, 제32조제1항"을 "제32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항 제3호 중 "제24조제3항"을 "제24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를 각각 "시·도지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 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제2호의 사유로 영업 허가를 취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 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9조에 따라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제2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식품의약품안전 처장, 시·도지사"를 각각 "시·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를 "시·도지사"로 하며, 같은 항 단 서 중 "제22조제5항"을 "제22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 의 부분 전단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를 "시·도지사"로 한다.

제2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를 "시·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2조제5항"을 "제22조제6 항"으로 한다.

제31조제2항제4호 중 "가공"을 "처리"로 한다.

제31조의2제1항 중 "제4조·제5조 또는 제33조에 위반된 사실(축산물의 위해와 관련이 없는 위반사항은 제외한다)"을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 32조 또는 제33조에 위반된 사실(축산물의 위해와 관련이 없는 위반사항 은 제외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가 판매하는 식품이 「식품위생법」 제4조, 제7조제5항, 제10조제2항, 제12조의2제3항 또는 제13조에 위반된 사실(식품의 위해와 관련이 없는 위반사항은 제외한다)"로한다.

제31조의3부터 제31조의5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품질, 축산물의 포장과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를 "품질과 축산물의 포장"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7호 중 "처리·가공"을 각각 "처리"로 한다.

제33조의2의 제목 "(위해 평가)"를 "(위해성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2 항 중 "처리·가공"을 "처리"로 한다.

제33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축산물가 공업, 식육포장처리업"을 "식육포장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다음 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해성평가의 대상, 방법 및 절차, 일시적 금지 및 해제 조치와 위해성평가 결과공표 등에 관한 사항은 「식품위생법」 제15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식품" 또는 "식품등"은 "축산물"로, "심의위원회"는 "축산물위생심의 위원회"로 본다.

제34조 전단 중 "집유업,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을 "집유업 또는 식육포장업"으로, "집유실적, 축산물가공품"을 "집유실적"으로 한

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축산물의"를 "축산물 및 식품(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영업자가 판매하는 식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의"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가공"을 "처리"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식품위생법」 제4조, 제7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2조의2제2항 또는 제13조를 위반한 식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가 판매하는 식품만 해당한다)

제36조제4항 중 "제7호 또는 제8호"를 "제7호·제8호 또는 제9호"로 한다.

제37조제2항 본문 중 "제5조제2항 또는 제33조제1항"을 "제5조제2항, 제33조제1항, 「식품위생법」 제4조 또는 제7조제4항"으로, "축산물"을 "축산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가 판매하는 식품"으로 한다.

제39조 중 "가공"을 "처리"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가공, 포장"을 "포장"으로 한다.

제41조제13호 중 "제22조제5항"을 "제22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5호의2를 삭제한다.

제44조제2항 본문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을 "이 법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업무 중"으로, "인증 등에 관한 업무와 제31조의3, 제31조의4 및 제31조의5에 따른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인증"으로 한다.

제45조제1항제5호 중 "가공"을 "처리"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가공· 포장"을 "포장"으로 한다.

제45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가축의 도살·처리, 집유, 축산물의 처리· 포장·보존 또는 유통을 한 자
- 2.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 운반 또는 진열한 자
- 3.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그 규격 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용기등을 사용한 자
- 6. 제36조제1항 · 제2항 또는 제37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제4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가공"을 "처리"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부터 제9호의 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그 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를 한 자.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적합하게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 2.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표시가 없는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포장·보관·운반 또는 진열한 자

- 9. 제19조제1항 또는 제36조제1항에 따른 검사·출입·수거·압류· 폐기 조치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 9의2.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준 또는 제22조제5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자
- 9의3.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9의4.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15. 제38조제3항에 따른 게시문 또는 봉인을 제거하거나 손상한 자제4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제45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천만원"을 "1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제22조제5항"을 "제22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0호를 삭제한다.

9. 제3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제47조제2항제10호, 제10호의2 및 제10호의3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제3항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 19조, 제19조의2, 제22조제4항, 제24조제3항 · 제6항, 제27조제4항의 개 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영업허가 및 영업신고의 수리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4항 및 제2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영업의 허가를 신청하거나 영업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3조(안전관리인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제2항에 따라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운용하는 축산물 가공업의 영업자는 「식품위생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 적용업소로 인증받은 것으로 본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제9조제3항에 따라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가 안전 관리인증작업장으로 인증받았거나 인증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로 인증받거나 인증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제4항에 따라 축산물의 가공단계를 포함한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로 인증받았거나 인증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로 인증받거나 인증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 제4조(영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물가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각각「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의 등록을 하였거나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2조제1항에 따라 식육포장처리업의 허가를 받거나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식육포장업의 허가를 받거나 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 제5조(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 전의 제31조의3제1항에 따라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하 였거나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식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하였거나 등록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 제6조(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9조에 따라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사람 및 검거에 협조한 사람에 게 지급하는 포상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7조(고시·처분·명령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축산물의 가공과 관련하여 행한 고시·처분·명령,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청·신고,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 제8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5조 및 제47 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2호 중"「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축산물 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을"「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식육포장업"으로 한다.

②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식육포장처리업의"를 "식육포장업의"로, "식육포장 처리업자"를 "식육포장업자"로 한다.

제13조제2항 및 제14조제1항 중 "식육포장처리업자"를 각각 "식육포장업자"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식육포장처리업자 등의 포장처리 및 거래 신고 등)"을 "(식육포장업자 등의 포장처리 및 거래 신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식육포장처리업자"를 각각 "식육포장업자"로 한다.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식육포장처리업자"를 각각 "식육포장업자"로 한다.

제20조제2호 중 "식육포장처리일"을 "식육포장일"로 한다.

제23조, 제24조제2항·제3항 및 제26조제1항 중 "식육포장처리업자" 를 각각 "식육포장업자"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축산물의 위	제1조(목적)
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	
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축의 사	
육·도살·처리와 축산물의 <u>가</u>	<u>처</u>
<u>공·유통</u> 및 검사에 필요한 사	리・포장・보존・유통
항을 정함으로써 축산업의 건전	
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축산물"이란 식육·포장육	2
· 원유(原乳) · <u>식용란(食用</u>	<u>식용란(食用</u>
卯)・식육가공품・유가공품・	<u> </u>
<u>알가공품</u> 을 말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포장육"이란 판매(불특정다	4
수인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경	
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목적으로 식육을 절단[세절	
(細切) 또는 분쇄(粉碎)를 포	
함한다]하여 포장한 상태로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서	
화학적 합성품 등의 첨가물이	

나 다른 식품을 첨가하지 아 ----- 식품(「식품위생 니한 것을 말한다.

- 5. ~ 7. (생략)
- 8. "식육가공품"이란 판매를 목 │ <삭 제> 적으로 하는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 육류, 그 밖에 식육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9. "유가공품"이란 판매를 목적 으로 하는 우유류, 저지방우유 류, 분유류, 조제유류(調製乳 類), 발효유류, 버터류, 치즈류, 그 밖에 원유 등을 원료로 하 여 가공한 것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10. "알가공품"이란 판매를 목 적으로 하는 난황액(卵黃液), 난백액(卵白液), 전란분(全卵 粉), 그 밖에 알을 원료로 하 여 가공한 것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11. "작업장"이란 도축장, 집유 | 11. -----리장 또는 축산물보관장을 말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 을 말한다. 이하 같다)--.

5. ~ 7.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장, 축산물가공장, 식육포장처 -- 식육포장업장 ------

하다.

12. (생략)

- 13.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 리"란 축산물가공품(식육가공 품, 유가공품 및 알가공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가공단 계부터 판매단계까지 단계별 로 정보를 기록 · 관리하여 그 축산물가공품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축산 물가공품의 이력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 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 을 말한다.
- 제3조의2(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제3조의2(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의 설치 등) ① (생 략)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조사 · 심의한다.
 - 1. 2. (생략)
 - 3. 축산물의 가공・포장・보존| 3. ----- 처리------·유통의 기준 및 성분의 규 격에 관한 사항
 - 4. ~ 6. (생략)
 - ③ ④ (생 략)
- 제4조(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① 제4조(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① (생 략)

_	_	_	_	

12. (현행과 같음) <삭 제>

의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 1. 2. (현행과 같음)

- 4. ~ 6. (현행과 같음)
- ③ · ④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위생상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 다.
- 및 유통의 방법에 관한 기준 (이하 "가공기준"이라 한다)
- 2. 축산물의 성분에 관한 규격 (이하 "성분규격"이라 한다)
- 3. 축산물의 위생등급에 관한 기준
-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가공 기준 및 성분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축산물에 대하여는 그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로 하여 금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제 출하도록 하여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 률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축산물 시험 · 검사기관의 검토 를 거쳐 그 가공기준 및 성분규 격을 제2항에 따른 고시 전까지 한시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④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축산 |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공중 ②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축산 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1. 축산물의 원료에 관한 기준
- 1. 축산물의 가공·포장·보존 2. 축산물의 처리·포장·보존 및 유통의 방법 등에 관한 기 준
 - 3. 축산물의 성분에 관한 규격
 - 4. 원유의 위생등급에 관한 기 준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에 따른 기준 및 규격의 시험 방법

<삭 제>

물의 <u>기준, 가공기준 및 성분규</u> <u>격</u>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 하고 수입자가 요구하는 <u>기준,</u> <u>가공기준 및 성분규격</u>에 따를 수 있다.

- ⑤ 가축의 도살·처리, 집유와 축산물의 <u>가공·포장</u>·보존· 유통은 <u>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u> 규정에 따른 <u>기준, 가공기준 및</u> <u>성분규격</u>에 따라야 한다. 판매 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축산물의 경우에도 같다.
-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 가공기준 및 성분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용기등의 규격 등) ① <u>식품</u> 의약품안전처장은 축산물의 위 생적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축산물에 사용하는 용 기, 기구, 포장 또는 검인용・인 쇄용 색소(이하 "용기등"이라 한다)에 관한 <u>규격 등 필요한</u>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u>기仓 및 ボ격</u>
<u>기준</u>
및 규격
⑤
<u>처리·포장</u>
<u>제1항 및 제2항</u>
<u>기준 및 규격</u>
⑥ <u>제1항 및 제2항</u>
<u>기준 및 규격</u>
제5조(용기등의 규격 등) ① <u>축산</u>
물의 위생적 처리를 위하여
규격 등에 관한 사
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규격 등이 정② 축산물에 사용하는 용기등은하여진 경우에는 그 규격 등에제1항에 따른 규격 등에 적합한적합한 용기등을 사용하여야 한것이어야 한다.다.
- 제7조(가축의 도살 등) ① 가축의 도살·처리, 집유, 축산물의 <u>가</u> <u>공</u>·포장 및 보관은 제22조제1 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작업장 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 3. (생략)
 - ② ~ ⑩ (생 략)

제8조(위생관리기준) ① (생 략)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영업 자는 위생관리기준에 따라 해당 작업장 또는 업소에서 영업자 및 종업원이 지켜야 할 자체위 생관리기준을 작성·운영하여 야 한다.
- 1. (생략)
- 2.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축 산물가공업의 영업자
- 3.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u>식</u> 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

제1항에 따른 규격 등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제7조(가축의 도살 등) ①
<u>처</u>
리
•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⑩ (현행과 같음)
제8조(위생관리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1. (현행과 같음)
<삭 제>
<u> </u>
3 실
육포장업

- 4. (생략)
- ③ (생략)
- 제9조(안전관리인증기준) ① 식품 지의약품안전처장은 가축의 사육부터 축산물의 원료관리·처리 ·가공·포장·유통 및 판매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인체에 위해(危害)를 끼치는 물질이 축산물에 혼입되거나 그 물질로부터축산물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각 과정별로 안전관리인증기준(이하 "안전관리인증기준(이하 "안전관리인증기준"이라 한다) 및 그 적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 ②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 축업의 영업자, 같은 항 제2호 에 따른 집유업의 <u>영업자 및 같</u> 은 항 제3호에 따른 축산물가공 업의 영업자 중 총리령으로 정 하는 영업자는 안전관리인증기 준에 따라 해당 작업장에 적용 할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이하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이라 한다)을 작성·운용하여야 한

4.	(현행과	같음)
----	------	-----

(3)	(혀	행과	간	<u>،</u>
\U/	\ 5 !	~~	´ =	\mathbf{T}

제9조(안전관리인증기준) ①
<u>처리</u>
②
<u>영업자</u>

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섬 지역에 있는 영업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생략)

④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축산업협동조합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가 가축의 사육, 축산 물의 처리 · 가공 · 유통 및 판매 등 모든 단계에서 안전관리인증 기준을 준수하고 있음을 통합하 여 인증받고자 신청하는 경우에 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그 신 청자와 가축의 출하 또는 원료 공급 등의 계약을 체결한 작업 장 · 업소 또는 농장의 안전관리 인증기준 준수 여부 등 인증요 건을 심사하여 해당 신청자를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로 인증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작업 장・업소 또는 농장은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 • 안 전관리인증업소 또는 안전관리 인증농장으로 각각 인증받은 것 으로 본다.

③ (현행과 같음)
4
<u>유통·판매 및 식</u>
<u>품의 가공</u>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
증기준과 「식품위생법」 제48
조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식품의 가공에만 해당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
<u>안</u>
전관리인증업소 · 안전관리인증
농장 또는 「식품위생법」 제48
조제3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적용업소로(이하 "식
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⑤ ~ ⑩ (생 략)

제9조의4(인증의 취소 등) 식품의 제약품안전처장은 안전관리인증 작업장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하거나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 3. (생략)
- 4. 제4조제5항 · 제6항, 제5조제 2항, 제8조제2항, <u>제12조제2항</u> · 제3항, 제18조, 제32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을 위반하거 나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제27조에 따라 2개월 이상의 영업정지(영업의 일부정지는 제외한다) 명령을 받거나 그를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
- 5. ~ 7. (생략)

<신 설>

<u> </u>
⑤ ~ ⑩ (현행과 같음)
제9조의4(인증의 취소 등)
·.
1. ~ 3. (현행과 같음)
4
<u>제12조제2항</u>
5. ~ 7. (현행과 같음)
제9조의6(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에 대한 법률 적용) 제

라 하다) ---

제12조(축산물의 검사) ①・② 제12조(축산물의 검사) ①・② (생 략)

③ 제21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 가공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의 영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가공한 축산물 이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 합한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 다.

④ 시·도지사는 장비·시설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작업장에서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검사 를 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식품・의

9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통합 인증업체로 인증을 받은 자 중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로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보는 자 에 대해서는 제9조, 제9조의3. 제9조의4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증변경, 인증 및 변경 인증 사 실의 증명 서류발급, 교육, 조사 •평가, 인증의 취소 및 그 밖에 식품안전관리인증적용업소에 관한 사항은 「식품위생법」 제 48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현행과 같음)

<삭 제>

4	
제2항	

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2호에 따 른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에 검 사를 위탁하게 할 수 있다.

- ⑤ 제3항에 따라 검사하거나 제 4항에 따라 검사를 위탁한 영업 자는 검사 결과 해당 축산물이 제4조제5항 · 제6항 및 제33조 를 위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 ⑥ (생략)
-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 항에 따른 검사의 항목, 방법,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 리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3(축산물의 재검사)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2조, 제19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또는 제25조에 따라 축산물을 검사한 결과 <u>가공기준 및 성</u>분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적절한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해당 영업자에게 그 검사 결과를 통보하

⑤ <u>제4항</u>
· ⑥ (현행과 같음)
⑦ <u>제1항, 제2항</u>
제12조의3(축산물의 재검사) ① -
제4조에 따른 기
<u> </u>
<u>也 </u>

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제15조의2(수입·판매 금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특정
국가 또는 지역에서 도축·처리
·가공·포장·유통·판매된
축산물이 위해한 것으로 밝혀졌
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는 그 축산물을
수입·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
으로 <u>가공·포장</u>·보관·운반
또는 진열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② ~ ⑥ (생 략)

제19조(출입・검사・수거)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영업자에게 축산물의 검사 결과 및 수출입 실적 등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관 또는 관계 공무원이 영업 장에 출입하여 축산물, 시설, 서류 또는 작업 상황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축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5조의2(수입・판매 금지 등)
①
처리
<u>처리·포장</u>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9조(출입·검사·수거) ①
호시민 미 시
<u>축산물 및 식</u> 프/미토러러 O 근 저치는 여어기
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가 판매하는 식품을 말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의
<u> </u>
영업소(사무소, 창고, 제조소,
저장소, 판매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u> </u>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미검사품 및 제33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축산물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검사관 또는 관계 공무원이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또는 집단급식소에 출입하여 미검사품의 처리·가공·사용·보관·운반·진열 또는 판매 상황 등을 검사하게 할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축산물을 무상으로수거하게 할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입 ·검사·수거를 하는 검사관 또 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 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업 장,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 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의 소유 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출입·검사·수 거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

<삭 제>

3	<u>제1항</u>	
4	<u>제1항</u>	<u>영업</u>
<u>소</u> -		
		<u>제1항</u>

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의2(소비자 등의 위생검사 조 등 요청) ① 식품의약품안전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 수 · 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 소 비자단체 또는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 · 검사 등에 관한 법 률」 제6조에 따른 시험・검사 기관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 험・검사기관(이하 이 조에서 "시험·검사기관"이라 한다)이 축산물 또는 영업장 등에 대하 여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 른 출입・검사・수거 등(이하 이 조에서 "위생검사등"이라 한 다)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생략) ②·③ (생 략) 제20조의2(축산물위생감시원) ① | 저

제20조의2(죽산물위생감시원) (1)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직
무나 그 밖의 축산물 위생에 관

· 제19조의2(소비자 등의 위생검	사
등 요청) ①	
<u>제19조제1항</u>	
· 	
1.・2.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20조의2(축산물위생감시원)	1
다음 각 호	
축산물 위생 등	에

한 지도 등을 하게 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을 포함 한다), 특별시·광역시·특별자 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 ·군·자치구에 축산물위생감 시원을 둔다.

<u><신 설></u>

<신 설>

<신 설>

<u><신</u>설>

② (생 략)

제21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1. 2. (생략)
- 3. 축산물가공업
- 4. 식육포장처리업

<u>.</u>
 제19조제1항에 따른 출입・
검사・수거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
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출
<u>입・검사・수거</u>
3.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출
<u>입・검사・수거</u>
4. 「식품위생법」 제22조제1항
에 따른 출입・검사・수거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①
<u>.</u>
1.•2. (현행과 같음)
<삭 제>
4. 식육포장업

5. ~ 7. (생 략)
7의2. 식육즉석판매가공업
8. (생 략)
② (생 략)

제22조(영업의 허가) ① 제21조제 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축업·집유업 또는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실육포장처리업 또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축산물보관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별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③ (생 략) <신 설>

<삭 제>
8.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ll 22조(영업의 허가) ① <u>제21조제</u>
1항제1호 및 제2호
도축업 또는 집유업
<u>식육포장업</u>
<u>특별자치시장·특</u>
별자치도지사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영업

의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

을 받은 날부터 근무일을 기준

으로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 또

는 허가 처리지연 사유를 통지

하여야 <u>하며, 제2항에 따른 영</u>

5. ~ 7. (현행과 같음)

④ · ⑤ (생 략)

제24조(영업의 신고) ① 제21조제 저 1항제6호, 제7호, 제7호의2, 제8 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1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갖 추고 <u>특별자치도지사</u>・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을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하거나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

	업의 변경허가 신청을 받은	경
	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	터
	근무일을 기준으로 7일 이내	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 처리지	연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
	우 그 기한 내에 허가 여부	또
	는 허가 처리지연사유를 통지	
	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한	
	지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것으로 본다.	
	<u> </u>	과
	같음)	,
ıÌ	 24조(영업의 신고) ①	
'	24年(8日年 元平) ①	
	<u>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u>	도
	지사	
	②	

특별자치시장・특

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 <u>별자치도지사</u>------여야 한다. -----

<신 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를 할 수 없다.
1. ~ 4. (생 략)
<신 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제1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만 해당한다)가「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
를 받은 날부터 근무일을 기준
으로 3일 이내에 수리(修理) 여
부 또는 수리 처리지연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한이
지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가 수
리된 것으로 본다.
<u>4</u>
 1. ~ 4. (현행과 같음)
·
1. ~ 4.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 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 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 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 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⑤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 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⑤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 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⑤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 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⑤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 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⑤

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신 설>

제25조(품목 제조의 보고) 제22조 제 제1항에 따라 축산물가공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축산물을 가 공하거나 식육포장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식육을 포장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품목의 제조방법설명서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도지사 또는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제26조(영업의 승계) ① ~ ③ (생 제략)

,
<u>⑥</u>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5항의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
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
게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
장은 「전자정부법」 제39조에
따라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25조(품목 제조의 보고)
<u>식육포장업</u>
포장육을 만
드는
<u>특별자치시장·특</u>
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
<u>청장</u>
∥26조(영업의 승계) ① ~ ③ (현

행과 같음)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계에 관하여는 제22조제3항 및 <u>제</u>24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① <u>식품</u> 지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소 폐쇄(제24조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해당한다. 이하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하여야한다.

1. 제4조제5항 · 제6항, 제5조제 2항, 제6조제2항 · 제3항, 제8 조제2항, 제9조제2항, 제9조의 3제6항, 제10조,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제1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4조제2항,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제4

(4)
<u>제</u>
<u>24조제4항</u>
∥27조(허가의 취소 등) ① <u>시·</u>
도지사
1
1.
<u>제12조제1항·제2항·제5항</u> -

항, 제21조, 제22조제5항, 제24 조제2항, 제25조, 제29조제2항 ·제3항, 제30조제5항·제6항, 제31조, 제31조의2제1항·제2 항, 제31조의3제1항 각 호 외 의 부분 단서, 제31조의4제1항 후단·제2항 단서, 제32조제1 항, 제33조제1항 또는 제34조 를 위반한 경우

- 2. (생략)
- 3. 제22조제3항 또는 제24조제3
 <u>항</u>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게 된 경우
- 4. ~ 6. (생략)

1. • 2. (생 략)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 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은 영업자가 제1항에 따른 영업 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면 영업허가를 취소하거 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 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업허가를 취소하거 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u>제22</u> 조제 <u>6항</u>
<u>제32조제1항</u>
2. (현행과 같음)
· / /
3 <u>제24조제4</u>
<u>항</u>
4. ~ 6. (현행과 같음)
② 시·도지사
③ 시 • 도지사
·
1. • 2. (현행과 같음)

<신 설>

④·⑤ (생 략)

제28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 지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영업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심한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5항·제6항, 제6조제2항·제3항,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7조, 제32조제1

-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은 제3항제2호의 사유
 로 영업허가를 취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
 에게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
 장은 「전자정부법」 제39조에
 따라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u>⑤</u>·<u>⑥</u>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제28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
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① <u>시·도지사</u>

항 또는 제33조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생략)
- ③ <u>식품의약품안전처장</u>, 시·도 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은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 관서의 장에게 과세 정보 제공 을 요청할 수 있다.
- 1. ~ 3. (생략)
-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 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 27조제1항에 따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 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제22조제5항, 제24조제2항에 따 른 폐업 등으로 제27조제1항에

② (현행과 같음)
③ <u>시·도지사</u>
1. ~ 3. (현행과 같음)
④ <u>시·도지사</u>
제22조제6항

따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 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⑤ <u>식품의약품안전처장</u>, 시·도 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은 제4항에 따라 체납된 과징금 의 징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 는 정보를 해당 각 호의 자에게 각각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 3. (생 략)

제28조의2(위해 축산물 판매 등에 저 따른 과징금 부과 등) ① <u>식품</u> 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 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가 판매한 해당 축산물의 소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 1. · 2. (생략)
- ② (생략)
- ③ 제2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

<u>.</u>
⑤ <u>시·도지사</u>
1. ~ 3. (현행과 같음)
게28조의2(위해 축산물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① <u>시·</u>
도지사
1. •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제22조제5항, 제24조제2항에 따라 폐업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④ (생략)

- 제31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생 략)
 - ②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을 할 때 위생적 관리와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 3. (생략)
 - 4. 축산물의 위생적인 <u>가공</u>·포 장·보관·운반·유통·진열 ·판매 등에 관한 사항
 - 5. · 6. (생략)
- 제31조의2(위해 축산물의 회수 및 폐기 등) ① 영업자(「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영업에 사용할

<u>제22</u> 조제6항
④ (현행과 같음)
제31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현행과 같음)
②
1. ~ 3. (현행과 같음)
4 처리
5. • 6. (현행과 같음)
제31조의2(위해 축산물의 회수 및
폐기 등) ①

목적으로 축산물을 수입하는 자는 해당 축산물이 제4조·제5조 또는 제33조에 위반된 사실(축 산물의 위해와 관련이 없는 위반사항은 제외한다)을 알게 된경우에는 지체 없이 유통 중인해당 축산물을 회수하여 폐기(회수한 축산물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용도로활용하는 경우에는 폐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하 이 조에서같다)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제31조의3(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 관리의 등록 등) ① 축산물가공 품을 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 중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를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고 해당 축산물 가공품을 축산물가공품이력추 적관리 대상으로 식품의약품안 전처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다 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조제유류를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대 ----- 제4조부터 제6 조까지, 제32조 또는 제33조에 위반된 사실(축산물의 위해와 관련이 없는 위반사항은 제외한 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가 판매하는 식품이 「식 품위생법」 제4조, 제7조제5항, 제10조제2항, 제12조의2제3항 또는 제13조에 위반된 사실(식 품의 위해와 관련이 없는 위반 사항은 제외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u>삭 제></u>

- 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게 등록하여야 한다.
- 1. 조제유류를 가공하는 자로서 매출액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2. 조제유류를 판매하는 자로서 매장면적이 총리령으로 정하 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 (이하 "등록자"라 한다)는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식 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 여야 한다.
-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등록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축산물 가공품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등록자 가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의 용 도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그 지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등록 자가 제31조의4제1항 후단의 보 관의무를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 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⑤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의 등록절차, 등록사항, 변경신 고절차, 지원기준, 지원금 회수 절차 · 방법, 등록취소 등의 기 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4(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 | <삭 제> 관리 정보의 기록 등) ① 등록 자는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 리에 필요한 정보로서 총리령으 로 정하는 정보(이하 "이력추적 관리정보"라 한다)를 전산기록 장치에 기록 · 보관 및 관리하여 야 한다. 이 경우 보관기간은 해 당 축산물가공품의 유통기한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날이 경과한 날부터 2년 이상으로 한다.

② 등록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 라 축산물가공품에 축산물가공 품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할 수 있다. 다만, 제3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조제 유류 등록자는 축산물가공품이

- 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하여야 한 다.
- ③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축산 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표시 를 고의로 제거하거나 훼손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이력추적관 리번호를 알아볼 수 없게 하여 서는 아니 된다.
- ④ 등록자는 이력추적관리정보 가 제31조의5제1항에 따른 축산 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 연계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⑤ 등록자는 이력추적관리정보 의 기록・보관 및 관리 방법 등 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준 수하여야 한다.
-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총리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 자에 대하여 제5항에 따른 기준 의 준수 여부 등을 3년마다 조 사・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제3 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조제유류 등록자에 대하여는 2년마다 조사・평가 하여야 한다.

제31조의5(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 <삭 제> 관리시스템의 운영 등) ① 식품 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위생 법」 제49조의3에 따른 식품이 력추적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축산물 가공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이 라 한다)을 운영하여야 한다.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력 추적관리정보가 축산물가공품 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 연계되 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 항에 따라 연계된 이력추적관리 정보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정 보를 소비자 등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축산물가공품의 유통기한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날이 경과한 날부터 1년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④ 누구든지 제2항에 따라 연계 된 이력추적관리정보를 축산물 가공품이력추적관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

다.

제32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 제조 방법, 성분, 영양가, 원재료, 용도 및 품질, 축산물의 포장과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 또는 과대포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 4. (생 략)
- ② (생략)

제33조(판매 등의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 적으로 <u>처리·가공</u>·포장·사 용·수입·보관·운반 또는 진 열하지 못한다. 다만, 식품의약 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 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 1. ~ 6. (생략)
- 7.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또는 제24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허

제32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① -
<u>품질과 축산물의 포장</u>
<u>,</u>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3조(판매 등의 금지) ①
/NOJ工(현대 6 기 단기) (1)
-J →J
<u>처리</u>
1. ~ 6. (현행과 같음)
7

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 지 아니한 자가 <u>처리·가공</u> 또는 제조한 것

8. • 9. (생략)

② (생략)

제33조의2(위해 평가) ① (생 략) 저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 항에 따른 위해 평가가 끝나기 전까지 국민건강을 위하여 신속 한 예방조치가 필요한 축산물에 대하여는 그 축산물을 판매하거 나, 그 축산물을 판매하기 위하 여 처리·가공·포장·사용· 수입·보관·운반 또는 진열하 는 것을 일시적으로 금지할 수 있다.
-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 항에 따른 일시금지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신속한 금지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위원회의
-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심의

<u>처리</u>
8.・9.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세33조의2 <u>(위해성평가)</u> ① (현행
과 같음)
②
처리
<u><삭 제></u>

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야 한다.

-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 항에 따라 일시금지 조치를 한 때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허 가권자에게 도축업, 집유업, 축 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또 는 축산물보관업의 허가를 해당 금지조치가 해제될 때까지 보류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 항에 따른 위해 평가 결과 위해 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제 3항 단서에 따른 심의 결과 일 시금지 조치가 필요 없는 것으 로 판단된 축산물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제2항에 따른 일시금 지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 5항에 따른 허가 보류 요청을 한 때에는 일시금지 조치 해제 사실을 제22조제1항에 따른 허 가권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위해 평가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⑤
<u>식</u>
육포장업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해 성평가의 대상, 방법 및 절차, 일시적 금지 및 해제 조치와 위 해성평가 결과공표 등에 관한 사항은 「식품위생법」 제15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5조 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식품" 또는 "식품등"은 "축산물"로, "심의위원회"는 "축산물위생심 의위원회"로 본다.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생산실적 등의 보고) 제22 조제1항에 따라 도축업, <u>집유업</u>, <u>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u> <u>리업</u>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축실적, <u>집</u>유실적, 축산물가 <u>공품</u> 또는 포장육의 생산실적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은 이를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 ·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제36조(압류・폐기 또는 회수)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 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검사관 또는 제 2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축산물 위생감시원(이하 "축산물위생 감시원"이라 한다)에게 이를 압 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그 축 산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제34조(생산실적 등의 보고)
집유업
또는 식육포장업
집유실적
<u> </u>
제36조(압류・폐기 또는 회수) ①
축
스물 및 식품(대통령령으로 정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지 아 니하도록 용도, 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1. ~ 4. (생 략)
- 5.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살·처리, 집유, <u>가공</u>·포장 또는 보관한 축산물
- 6. ~ 8. (생 략)

<신 설>

②・③ (생략)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1호·제2호·제3호·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여 폐기처분 명령을 받은 축산물의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명령위반

하는 영업자가 판매하는 식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 ~ 4. (현행과 같음)		
5		
<u>처리</u>		
6. ~ 8. (현행과 같음)		
9. 「식품위생법」 제4조, 제7조		
제4항, 제10조제2항, 제12조의		
2제2항 또는 제13조를 위반한		
식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		
업자가 판매하는 식품만 해당		
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4		
<u>제7호·제8호 또는 제9호</u>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⑤ (생략)

제37조(공표) ① (생 략)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제4조제5항·제6항, 제5조제2항 또는 제3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 해당 축산물 및 영업자에 대한 정보를 공표할 수 있다. 다만, 축산물 위생에 관한 위해가발생한 경우에는 공표하여야 한다.

③ ~ ⑤ (생 략)

제39조(포상금) 식품의약품안전처 장은 제4조제5항·제6항, 제7조 제1항·제5항, 제10조, 제22조 제1항, 제24조제1항 또는 제33 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제12조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 한 식육을 <u>가공</u>, 포장, 사용, 보 관, 운반, 진열 또는 판매한 자 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 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 거한 사람 및 검거에 협조한 사 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⑤ (현행과 같음)
제37조(공표) ① (현행과 같음)
②
<u>제5조제2항, 제33조제1항,</u>
「식품위생법」 제4조 또는 제7
조제4항 축산물,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영업자가 판매하는
<u>식품</u>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9조(포상금)
<u>처리</u>

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 다.

제40조(보조금) ① 국가 또는 지 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축산물의 위생적인 처리, 가공, 포장 및 유통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업 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② (생략)

- 제41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리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 료를 내야 한다.
 - 1. ~ 12. (생 략)
 - 13. 제22조제5항에 따른 변경신 고를 하는 자
 - 14. · 15. (생략)
 - 15의2. 제31조의3제1항에 따라 축산물가공품을 축산물가공품 이력추적관리 대상으로 등록 하는 자
 - 16. (생략)
- 제4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제4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생 략)
 - 조, 제9조의2 및 제9조의3에 따

제40조(보조금) ①	
	<u>포장</u>
② (현행과 같음)	
제41조(수수료)	
1. ~ 12. (현행과 같음)	
13. 제22조제6항	
14.・15. (현행과 같음)	
< <u> 시</u> 제>	
<u> </u>	

16.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9 ② 이 법에 따른 식품의약품안 전<u>처장의 업무 중</u> -----

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 등에 관한 업무와 제31조의 3, 제31조의4 및 제31조의5에 따른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운영등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농장, 도축장및 집유장의 위생, 질병, 품질관리, 검사 및 안전관리인증기준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한다.

③ (생략)

제4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 기 는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 4. (생 략)
- 5.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금지 조치를 위반하여 축산물을 수 입・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 으로 <u>가공</u>・포장・보관・운반 또는 진열한 자
- 6. · 6의2. (생략)
- 7.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축

<u>인</u>
<u> </u>
③ (현행과 같음)
제45조(벌칙) ①
1. ~ 4.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5
5
5
5
5 <u>처리</u>

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 적으로 처리 · <u>가공 · 포장</u> · 사 용 · 수입 · 보관 · 운반 또는 진열한 자

- ② (생략)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1. · 2. (생 략)

<신 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포장
- <u>ヱ゚゚</u>

- ② (현행과 같음)
- 1.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가축 의 도살·처리, 집유, 축산물 의 처리·포장·보존 또는 유 통을 한 자
- 2.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축산 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 으로 보관·운반 또는 진열한 자
- 3.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그규격 등에 적합하지 아니한용기등을 사용한 자
- 4.·<u>5</u>.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
- 6. 제36조제1항 · 제2항 또는 제 37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 반한 자
- 4 -----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하다

- 1.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가축 1.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그 의 도살ㆍ처리, 집유, 축산물 의 가공・포장・보존 또는 유 통을 한 자
- 2.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축산 | 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 으로 보관·운반 또는 진열한 자
- 3.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그 규격 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용기등을 사용한 자
- 4.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집유하거나 축산물을 가공, 포 장 또는 보관한 자
- 5. ~ 8. (생략) <신 설>

<u>3천만원</u>	 	 	

- 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를 한 자.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 는 경미한 사항을 적합하게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 다.
- 2.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표시 가 없는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포장 ・보관・운반 또는 진열한 자 <삭 제>
 - ----- 처리---
 - 5. ~ 8. (현행과 같음)
 - 9. 제19조제1항 또는 제36조제1 항에 따른 검사・출입・수거 · 압류 · 폐기 조치를 거부 ·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신 설>

<신 설>

<신 설>

- 10. ~ 13. (생략)
- 14. 제3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삭 제>

 부분 단서를 위반하여 등록하

 지 아니한 자
- 15. 제36조제1항·제2항 또는 제37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 16. (생략)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u>3천만원</u>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 3. (생략)
- 4. 제38조제2항에 따른 게시문
 <박 제>

 또는 봉인을 제거하거나 손상
 한 자
-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9의2.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	<u>ح</u> ا_
또는 제22조제5항에 따른 3	ス 上
건을 위반한 자	
9의3.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4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9의4.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0. ~ 13. (현행과 같음) <삭 제>

<u>15.</u>	제3	88조	<u> 세3</u> 현	항에	따른	거	시됩	<u> </u>
<u></u>	는	봉인	을	제거	하거	나	손	<u>상</u>
ਨ੍ਹ	<u></u> 지	-						

16. (현행과 같음)

(5)
<u>2천만원</u>
1. ~ 3. (현행과 같음)

6		 	
	1 ടി പി റി		

하다.

- 1.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그 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를 한 자.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 는 경미한 사항을 적합하게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 다.
- 2.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표시 | <삭 제> 가 없는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포장 · 보관 · 운반 또는 진열한 자
- 3. (생략)
- 4.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검 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 로 검사를 한 자
- 5. 제19조제1항·제2항 또는 제 36조제1항에 따른 검사·출입 ·수거·압류·폐기 조치를 거부 ·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 6. (생략)
- 7.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준 또 는 제22조제4항에 따른 조건 을 위반한 자
- 8.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신 고를 하지 아니한 자

<삭 제>

3. (현행과 같음) <삭_제>

<삭 제>

6. (현행과 같음) <삭 제>

8. 제22조제6항-----

- 9.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 9. 제3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고를 하지 아니한 자
- 10.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 고를 하지 아니한 자
- 11. · 12. (생략)
- ⑦ (생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 9. (생략)
- 10. 제3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으로 보고를 한 자
- 10의2. 제31조의4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축산물가공품이력추 적관리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 10의3. 제31조의4제3항을 위반 하여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 리의 표시를 고의로 제거하거 나 훼손하여 이력추적관리번 호를 알아볼 수 없게 한 자
- 11. (생략)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으로 보고를 한 자

<삭 제>

- 11. · 12. (현행과 같음)
- ⑦ (현행과 같음)

제47조(과태료) ① (생 략) 제47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 1. ~ 9.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 11. (현행과 같음)
- (3) -----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2. (생략)
- 2의2. 제31조의3제2항을 위반하 <삭 제> 여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 한 자
- 2의3. 제31조의5제4항을 위반하 여 이력추적관리정보를 축산 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 3. (생략)
- ④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 3. (현행과 같음)
- ④ (현행과 같음)